


의정활동보고서



제249회 임시회(2011. 8. 23 ~ 9. 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수해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어느 덧 찾아온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오늘부터 보름간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가 개최되는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 하절기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또한 일본국의 독도문제 등을 단호하게 대처한 독도수호특위 활동과 8월 11일 개막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국 15개 시·도 의회를 직접 방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도민복리와 지역발전의 혁신적 계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개발은 경상북도가 한 단계 힘차게

재도약함으로써 웅도 경북의 영광을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기를 갈망하는 3백만 도민의 소망에 충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새로이 추진코자 하는 정책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천명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정책개발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풍수해 예방대책과 곧 다가올 추석을 맞아 물가안정과 불우이웃돕기, 체불임금 해소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전반기 2년차 예결특위 구성결의 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재차 당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孝

차 례

I. 개	황		145
II. 의사일정			147
III. 의안처리			153
IV. 민원처리			155
V. 본회의 보고사항			157
VI. 5분 자유발언			175
☐ 이시하 의원(1차 본회의)			175

부 록

☐ 조례안(12건)	181
☐ 결의안(1건)	241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49회 정례회는 2011년 8월 10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9월 6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8월 23일(화) 오후 2시에 개의하였고, 이시하 의원이 '2015년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 대회에 북한 참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9월 6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 결과에 따라 부결되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기타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실시된 상임위별 조례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비정규학교
(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심사유보되었다.

이 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비롯해 경북개발공사와 대구경북연구원
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안전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과 광주 여성재단 등을 방문하였고, 문화환경
위원회에서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조성현장과 산림자원개발원
사업현장,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안동문화권관광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김천과 성주지역을 방문하여
사단법인 전국흑염소 전업농협회 경북도지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건설소방위원회는 도청이전추진현황 보고를 비롯해 용암~선남간
도로확·포장공사현장, 구미보 건설공사현장방문을 하고 예천지역
35공구 준설사업의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청도, 상주, 안동에 위치한 학생야영장을 현지확인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1년 8월 23일(금)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1년 8월 23일 ~ 9월 6일(15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누계 28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7	1	2	1	1	1	-	1		
누 계	167	14	23	22	16	16	20	15	21	20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회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3(화) 14:00 (제1차)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 문화환경위원회 이시하 의원(문경) ☐ 안전처리 ○ 제2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9. 6(화) 11:00 (제2차)	☐ 안전심사 ○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6(화) 11:00 (제2차)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9. 1(목) 14:00 (제1차)	☐ 안전심사 ○ 제250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4(수)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5(목) 11:00 (제2차)	☐ 업무보고 ○ 경북개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8. 29(월)~ 8. 31(수)	☐ 현지방문 ○ 행원 풍력단지, JDC, 동문 전통시장 방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4~ 8. 25	☐ 현지방문 ○ 광주 빚고을 노인건강타운, 광주 여성재단 등	
8. 31(수)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6(금) (제1차)	☐ 현장방문 ○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 조성 현장 ○ 산림자원개발원內 사업현장 ○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 현장	
9. 1(목) 15:00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처리결과 ☐ 현안사항 보고 ○ 독도영토수호 대책 ○ 칠곡 미군기지내 고엽제 매립현장 조사내용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3(화) 15:3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농업산. 학협동심의회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8. 24(수) ~ 8. 25(목)	☐ 현지확인 등 ○ 사)전국흑염소 전업농협회 경북도지회와 간담회 및 농장견학 ○ 농기계임대사업장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품종 참깨시설 후작재배시범사업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30(화)	☐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 ☐ 도청이전추진현황보고 ☐ 용암~선남간 도로확 · 포장공사	
8. 31(수)	☐ 현장방문 ☐ 구미보 건설공사현장(구미 해평) ☐ 35공구 준설사업 사후관리실태 점검(예천)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6. 13(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5(목) ~ 8. 26(금)	☐ 현지확인 ☐ 학생야영장(청도, 상주, 안동)	

Ⅲ. 의안처리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20 (161)	17 (153)	13 (128)	3(1) (23)	1 (2)		(2)	3 (6)	
조 례 안	소 계	16 (83)	12 (75)	9 (59)	2(1) (14)	1 (2)		1 (2)	3 (6)	
	의 회 제 안	7 (24)	4 (21)	3 (16)	1 (5)			1 (1)	2 (2)	
	도지사 제 출	7 (45)	6 (41)	4 (33)	1(1) (7)	1 (1)		(1)	1 (3)	
	교육감 제 출	2 (14)	2 (13)	2 (10)	(2)	(1)			(1)	
규 칙 안		(1)	(1)	(1)						
예산·결산		(9)	(9)	(4)	(5)					
동의·승인		(15)	(15)	(13)	(2)					
건 의 안		(2)	(2)	(2)						
결 의 안		1 (20)	1 (20)	1 (18)	(2)					
기 타 안		3 (31)	3 (31)	3 (31)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6건)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10. 5 교육감, ‘10. 10. 15 교육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주택 조례안
(‘11. 5. 31 도지사, ‘11. 6. 24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8. 10 윤창욱 의원, ‘11. 8. 24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8. 12 도지사, ‘11. 9. 1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4 (38)	(6)	1 (5)	1 (5)	(12)	()	(3)	1 (3)	(1)	1 (3)
의 회 운 영										
기 경 회 계										
행 정 보건복지										
문 화 환경	2		1							1
농수산										
건 설 소 방	2			1				1		
교 육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4 (38)	3 (34)	()	()	1 (4)	()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2	1			1	
농 수 산						
건설소방	2	2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 2011. 6. 1부터 타기관 민원은 상임위 회부전 이송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15)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11. 8. 12)	경상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기획경제 (2011. 8. 16)
경상북도지사 (11. 8. 12)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윤창욱 의원 외 41명 (11. 8. 10)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달 의원 외 50명 (11. 7. 7)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1. 8. 16)
현해란·도기욱 의원 외 31명 (11. 7. 7)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송필각 의원 외 43명 (11. 8. 10)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변우정 의원 외 22명 (11. 8. 11)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종천 의원 외 16명 (11. 8. 12)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11. 8. 12)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11. 8.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11. 8.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11. 8. 12)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 (2011. 8. 16)
경상북도지사 (11. 8. 12)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 및 전문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 (2011. 8. 16)
경상북도교육감 (11. 8. 12)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교육 (2011. 8. 16)
"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조례 공포 사항(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1. 6.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2011. 7. 14 (제3265호)
"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266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문 화 환 경 위 원 회	8. 3	경주문화 엑스포	○ 사업장 현지확인 및 경주문화엑스포 성공다짐대회 개최 • 안압지 현지 확인 • 문화엑스포 추진상황 점검
농 수 산 위 원 회	6. 26 ~ 7. 3	몽골 중국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해외농업 사업장 방문 및 대응사업 발굴 • 해외농업개발 추진현황 파악 • 해외 농업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7. 12	농수산 위원실	○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 보고 • 농작물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마련 •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 등
건 설 소 방 위 원 회	7. 21.	안동보 상주보 현 장	○ 집중호우 관련 현황 파악 및 점검 • 피해현황 확인 및 문제점 파악 • 복구추진상황 점검
독도수호특별 위 원 회	7. 28 ~ 7. 29	울릉도	○ H의원 울릉도 방문계획에 따른 규탄결의대회 및 간담회 실시 • 울릉군 사업장 현지확인 및 간담회 • H의원 규탄 결의대회 실시 ※ 송필각 부의장 및 독도수호특별위원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6. 25전쟁 61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1. 6. 25(토) 11:00
 - 장 소 :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 참 석 : 이영식 의원
- 외국기업(T사) 탄소섬유공장 기공식 및 MOU 체결 참석
 - 일 시 : 2011. 6. 28(화) 11:00
 - 장 소 : 구미4공단내
 - 참 석 : 전인철 의원
- 농촌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참석
 - 일 시 : 2011. 6. 28(화) 11:00
 - 장 소 : 안동 탈춤주공연장
 - 참 석 : 김대호 의원
- 포스코 FINEX 3공장 착공식 참석
 - 일 시 : 2011. 6. 28(화) 15:00
 - 장 소 : FINEX 건설현장
 - 참 석 : 장세현 문화환경위원장, 김말분 의원
-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1. 6. 29(수) 11:00
 - 장 소 : 도청 제2회의실
 - 참 석 : 권영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 **경북관광인 환대서비스 실천 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1. 6. 30(금)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의원
- **잠사곤충 사업장 개소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1. 7. 1(금) 11:00
 - 장 소 : 상주 잠사곤충사업장
 - 참 석 : 김대호 의원
- **제15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1. 7. 1(금) 15:00
 - 장 소 : 잠실 실내체육관
 - 참 석 :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
- **제1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1. 7. 5(화) 11:00
 - 장 소 : 경주시 엑스포공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김말분, 김창숙, 배수향, 채옥주, 최학철, 한혜련 의원
- **재러시아 한인4세 청소년 의회방문**
 - 일 시 : 2011. 7. 7(목) 11:00
 - 장 소 : 도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이상효 의장

○ 한우소비촉진 시식행사 참석

- 일 시 : 2011. 7. 7(목) 12:00
- 장 소 : 도청 구내식당
- 참 석 : 이상호 의장, 이상용 농수산위원장, 강영석, 김창숙, 박기진, 정상진, 이왕식, 최학철 의원

○ 제5회 경북농아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1. 7. 7(목) 14:00
- 장 소 : 구미 GM컨벤션웨딩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대호, 변우정 의원

○ 2011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 참석

- 일 시 : 2011. 7. 7(목) 14:00
- 장 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김종천, 이경임 의원

○ 대구·경북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1. 7. 8(금) 10:00
- 장 소 : 대구스타디움
- 참 석 : 이상호 의장

○ 제5회 경북지적장애인 복지대회 참석

- 일 시 : 2011. 7. 8(금) 10:30
- 장 소 : 안동 가톨릭상지대학 소피아관
- 참 석 : 도기욱 의원

○ 도 합동감사반 방문

- 일 시 : 2011. 7. 8(금) 11:3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효 의장

○ 햇빛마을 개원10주년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1. 7. 8(금) 11:30
- 장 소 : 포항 문화복지동
- 참 석 : 김희수, 한창화 의원

○ 경상북도 의회사 편찬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1. 7. 8(금) 15:00
- 장 소 : 도의회 의장실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38회 경상북도 사진대전 및 제14회 문화유산 전국사진
공모전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1. 7. 8(금) 19:0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나기보, 배수향 의원

○ 낙동강사랑 시민탐사대회 참석

- 일 시 : 2011. 7. 9(토) 08:20
- 장 소 : 안동 음악분수 광장옆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제11회 경북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1. 7. 12(화) 10:00
 - 장 소 : 구미1대학 강당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김대호, 변우정, 이경임 의원
- 경상북도·성주군 ⇄“K”社 투자양해각서(MOU)체결
 - 일 시 : 2011. 7. 12(화) 11:00
 - 장 소 : 성주군청
 - 참 석 : 박기진 의원
- 경북농어업 FTA대책 특별위원회 제1기 활동성과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1. 7. 12(화) 16:00
 - 장 소 : 농업인회관
 - 참 석 : 이상호 의장, 이상용 농수산위원장, 박권현, 강영석, 나기보, 이왕식, 한창화 의원
- 지역 자원봉사단체 리더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1. 7. 13(수) 17:10
 - 장 소 : 경주시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호 의장, 박병훈, 이달, 채옥주, 최학철 의원
-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1. 7. 14(목) 11:30
 - 장 소 :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대회의실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대호, 나현아, 변우정, 심정규, 이경임, 박태환 의원

-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1. 7. 14(목) 17:30
 - 장 소 : 대구 DFC 2층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박병훈, 배수향, 서정숙, 한혜련 의원
- 제1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 참석
 - 일 시 : 2011. 7. 17(일) 11:00
 - 장 소 : 구미 선산문화회관
 - 참 석 : 김대호, 변우정 의원
- 2011 경주세계 EXPO 길거리홍보 이벤트 참석
 - 일 시 : 2011. 7. 18(월) 18:00
 - 장 소 : 대구시 동성로
 - 참 석 : 이상효 의장
-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특강
 - 일 시 : 2011. 7. 20(수) 16:00
 - 장 소 : 공무원교육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사)새농민회 경북도회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1. 7. 21(목) 11:00
 - 장 소 : 상주 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강영석, 김대호 의원

- 경상북도 4-H연합회 봉화식 참석
 - 일 시 : 2011. 7. 22(금) 19:30
 - 장 소 : 고래불해수욕장
 - 참 석 : 이상용 농수산위원장, 박진현, 김대호, 한창화 의원
- 제3회 영일만 사랑배 전국바둑대회 참석
 - 일 시 : 2011. 7. 23(토) 10:00
 - 장 소 : 포항 종합운동장
 - 참 석 : 이상호 의장
- 한국교육의원협의회 임원회의 참석
 - 일 시 : 2011. 7. 25(월) 11: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소회의실
 - 참 석 : 최우섭 의원
- 제13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개영식 참석
 - 일 시 : 2011. 7. 25(월) 14:00
 - 장 소 :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
 - 참 석 : 채옥주 의원
- 경상북도 장애인 정보화협회 임명식 참석
 - 일 시 : 2011. 7. 26(화) 10:00
 - 장 소 : 경산 장애인복지관
 - 참 석 : 김영식, 서정숙 의원

- 제9회 김천 전국가족 연극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7. 26(화) 18:3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나기보, 배수향 의원
- 포항 남부소방서 해도119 안전센터 청사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1. 7. 27(수) 11:00
 - 장 소 : 해도 119안전센터
 - 참 석 : 김희수 의원
- 2011년 전농 경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참석
 - 일 시 : 2011. 7. 27(수) 15:00
 - 장 소 : 임하댐 체육공원
 - 참 석 : 이영식 의원
-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
 - 일 시 : 2011. 7. 28(목)
 - 장 소 : 울산·부산광역시 의회
 - 참 석 : 윤창욱 의회운영위원장
- 2011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석
 - 일 시 : 2011. 7. 29(금) 11:00
 - 장 소 :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 참 석 : 장세현 문화환경위원장, 김희수 의원

○ 문화재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1. 7. 29(금) 14: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박병훈 의원

○ 봉화 은어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7. 30(토) 10:40
- 장 소 : 봉화 내성천
- 참 석 : 권영만 행정안전부차관, 나현아, 이경임 의원

○ 2011 전국장애인 양궁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1. 7. 30(토) 18:00
- 장 소 : 경산 장애인 복지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

- 일 시 : 2011. 8. 1(월)
- 장 소 : 대전시·충남도의회
- 참 석 : 장세현 위원장, 박병훈 의원

○ 물가잡기 전통시장 상인결의대회 및 캠페인 참석

- 일 시 : 2011. 8. 1(월) 14:30
- 장 소 : 구미 중앙시장 내
- 참 석 : 김대호, 변우정, 전인철 의원

- 의원 연구단체(청사초롱) 현지확인
 - 일 시 : 2011. 8. 1(월)~ 8. 2(화)
 - 장 소 : 안동·예천
 - 참 석 : 정상진 대표 외 18명
- 독도수호 쟁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1. 8. 2(화) 10:00
 - 장 소 : 포항 여객선 터미널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전찬걸 독도수호특별위원장, 김말분, 이 달, 최우섭, 한창화, 김원석, 장경식, 장두옥, 장세현, 채옥주 의원
- 일본 방위백서 규탄 성명서 발표
 - 일 시 : 2011. 8. 2(화) 14:00
 - 장 소 : 도의회
 - 참 석 : 전찬걸 독도수호특별위원장, 김말분 의원
-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
 - 일 시 : 2011. 8. 3(수)
 - 장 소 : 서울시·경기도 의회
 - 참 석 : 고우현 건설소방위원장, 김희원 의원
-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
 - 일 시 : 2011. 8. 3(수)
 - 장 소 : 인천시의회
 - 참 석 : 김영기 교육위원장, 홍광중 의원

- 2011 포항바다 국제연극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8. 3(수) 20:00
 - 장 소 : 포항 중앙상가 야외무대
 - 참 석 : 장세헌 문화환경위원장, 김말분, 이정호, 한창화 의원
-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
 - 일 시 : 2011. 8. 3(수) ~ 8. 4(목)
 - 장 소 : 강원·충북 도의회
 - 참 석 : 이상용 농수산위원장, 박권현 의원
-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 준비상황 보고회 및 성공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1. 8. 3(수) 16:00
 - 장 소 : 경주시 엑스포공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외 30명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 행사 참석
 - 일 시 : 2011. 8. 4(목) 11:00
 - 장 소 : 대구삼성금융빌딩 15층
 - 참 석 :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
- 축산정책개발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1. 8. 4(금) 14: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효 의장, 강영석, 김대호, 나기보, 박기진, 변우정, 최학철, 한창화 의원

- 제11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 일 시 : 2011. 8. 4(목) 17:00
 - 장 소 : 의성 종합운동장
 - 참 석 : 쏠 도의원

- 제8회 바른역사 정립과 통일기원 전국달리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1. 8. 5(금) 18:00
 - 장 소 : 구미 원평분수공원
 - 참 석 : 박태환 의원

- 2011 해변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8. 5(금) 19:30
 - 장 소 : 영덕 장사해수욕장
 - 참 석 : 김기홍 의원

- 신임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 도의회 방문
 - 일 시 : 2011. 8. 9(화)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효 의장 외 18명

-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
 - 일 시 : 2011. 8. 10(수)
 - 장 소 : 광주시 · 전남도 의회
 - 참 석 : 권영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김하수 의원

- 제1회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 대회 참석
 - 일 시 : 2011. 8. 10(수) 10:20
 - 장 소 : 문경 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이시하, 정상진, 한창화 의원
- 원전 선진지 연수
 - 일 시 : 2011. 8. 10(수) ~ 8. 19(금)
 - 장 소 : 프랑스, 일본
 - 참 석 : 이 달, 황이주 의원
- 2011년 시니어친화기업 현판식 참석
 - 일 시 : 2011. 8. 10(수) 15:00
 - 장 소 : 구미협동식품합명회사
 - 참 석 : 구자근 의원
-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축하공연 참석
 - 일 시 : 2011. 8. 10(수) 19:30
 - 장 소 : 경주 예술의 전당
 - 참 석 : 이상효 의장, 박병훈, 최학철 의원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점검 및 준비사항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1. 8. 11(목) 11:00
 - 장 소 : 대구 스타디움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8. 11(목) 17:00
 - 장 소 : 경주 엑스포 공원
 - 참 석 : 쏜 도의원
- 경상북도 북부청소년 성문화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1. 08. 12(금) 14:00
 - 장 소 : 경북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3층
 - 참 석 : 김영기 교육위원장, 이영식 의원
- 베트남 자매우호도시 타이응웬성 대표단 환영행사
 - 일 시 : 2011. 8. 12(금) 19:00
 - 장 소 : 경주시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42차 경북지구 JC회원대회 참석
 - 일 시 : 2011. 8. 13(토) 18:30
 - 장 소 : 봉화 내성천변
 - 참 석 : 이상효 의장, 이시하 의원
- 제66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 일 시 : 2011. 8. 15(월) 10:00
 - 장 소 :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 참 석 : 이상효 의장, 김명호, 김영기, 이영식, 심정규,
홍광중 의원

- 제47회 추계 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 환영식 참석
 - 일 시 : 2011. 8. 16(화) 19:00
 - 장 소 : 영덕 문화체육센터
 - 참 석 : 김기홍 의원
-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1. 8. 17(수) 14:00
 - 장 소 : 포항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장세현 문화환경위원장, 김희수, 김말분 의원
- 을지연습장 참관 격려
 - 일 시 : 2011. 8. 17(수) 15:30
 - 장 소 : 도청 충무시설
 - 참 석 : 이상효 의장, 송필각 부의장, 장경식 기획경제
위원장
-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1. 8. 18(목) 12:00
 - 장 소 : 대구시
 - 참 석 : 이상효 의장
- 경북 아동 성범죄 안전지킴이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1. 8. 18(목) 14:00
 - 장 소 : 포항시청 대강당
 - 참 석 : 김원석, 김희수, 채옥주 의원

- **경북농어업 뉴비전 생명산업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 참석**
 - 일 시 : 2011. 8. 19(금) 14:00
 - 장 소 : 농업인 회관
 - 참 석 : 이상용 농수산위원장, 박권현, 강영석, 김대호, 변우정, 정상진, 한창화 의원
- **관광개발공사 주민 공청회 참석**
 - 일 시 : 2011. 8. 19(금) 14:00
 - 장 소 : 경주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박병훈, 최우섭, 최학철 의원
- **제22차 경북지구 JC특우회 우정의날 참석**
 - 일 시 : 2011. 8. 20(토) 16:00
 - 장 소 : 울진 엑스포공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박진현, 이시하, 이영식 의원
- **경북 청소년육성재단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1. 8. 22(월) 10: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영식 의원
- **가창~각남간 4차로 확장 개통식 참석**
 - 일 시 : 2011. 8. 22(월) 11:00
 - 장 소 : 청도 이서 공사현장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고우현 건설소방위원장, 김명호, 김하수, 윤성규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1년 8월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시하 의원(문경) ◎

<<세계군인체육대회 북한참가 관련>>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문경출신 이시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지난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는 2018년 동계 올림픽개최지로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이 최종확정·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대회 등 세계 주요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경북도도 동계올림픽 유치확정과 대구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 못지 않은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바로 지난

5월 세계군인스포츠이사회 총회에서 2015년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지로 문경이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10여 개국 8,700여 명의 군인이 참여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오는 2015년 9월경에 10일간 문경시를 비롯한 경북지역 7개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문경은 세계적 스포츠 레저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우리 경북은 옹도 경북의 위상과 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의 기상을 드높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메인스타디움의 관중석 확장, 선수촌 건설, 그리고 요트 정박시설 등 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은 군인체육대회가 단순히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성공적인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통해 전 세계 군인들의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될 스포츠를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지대 한반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어떠한 형태와 방식을 따지지 않고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5회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북한팀 단장이 우리 측에 문경 군인체육대회 참가의사를 밝힌 적이 있으며 단일팀까지 꾸리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세계군인체육연맹도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단지 가능성 있는 이야기로만 머무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 경북도가 적극 나서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선수단이 참여하거나 남북 단일팀 구성이 현실화된다면 2015년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진정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통일을 앞당기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구촌 평화축제로 치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지금부터 경북도가 문화체육 관광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북한의 참가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을 위해 진정으로 300만 경북도민의 역량을 모으는 일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북의 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 록

- 조례안 : 12건
- 결의안 : 1건

■ 조 례 안

- 경상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경상북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 3 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 4 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6 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①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등) ①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 · 과		행 정 예 산 과
입 안 자	담당관 · 과장 직위 · 성명	행정예산과장 지방서기관 문영규
	담당 직위 · 성명	예산담당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정재원
	담당자 성명 · 전화	지방교육행정주사 이명숙(053-603-3683)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여 경상북도내 중소
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공장용지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자”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10.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의 설치) ①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③도지사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4 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

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 본부·실·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 팀·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자금 지원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기금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사업별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용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차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 6 조(기금의 지원대상자)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단체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
5. 시장정비사업자
6.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 한함)
7. 시장, 중·소백화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0. 체인사업자, 상점가 진흥조합 및 사업조합

제 7 조(기금지원 사업) ①자금별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벤처기업 육성자금 포함)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전환·물류현대화의 지원 사업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라.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 경영여건 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
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사업
- 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고부가
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아.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에 관련된 산업
- 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 차.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2. 중소기업통업 경쟁력강화지원자금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
- 나.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라. 상점가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
사업
-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사업조합의 전문
상가단지 건립사업, 사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바.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통업 경쟁력

강화사업

3.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정한 사업

4. 중소기업 운전자금

가.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나. 지역특화산품 생산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사업

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운영경비 지원사업

라.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사업

마.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영경비 지원사업

②도지사는 기금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출연금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 9 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제3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②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 2 장 기금의 지원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등) ①제5조제1호에 따른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등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등) ①도지사는 제12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융자승인 기준, 지원절차,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금심의위원회

제14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본부·실·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장
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장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5. 상공회의소협의회장
6.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
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20조(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및 대출취급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3. 주생산 업종

②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서(변경 전·후 비교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기금관리자는 용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자금대출 전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시설명, 제작업체, 규격, 수량 등)의 변경
2. 용자취급은행의 변경

④용자승인업체가 제3항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승인 신청서 및 변경사유서(변경 전·후 비교표 포함)
2. 변경증빙서류
3.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⑤기금관리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2조(용자승인 취소) ①도지사는 용자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2.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세금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융자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자금의 귀속) 제5조제4호에 의한 출자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24조(보고 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

가. 기금관리상황

나. 업체별 대출실적

다. 융자금 상환현황

라. 대출은행 변경 등 변동사항

마.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보증재단, 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가. 상담처리 상황

나. 자금지원에 관한 상황

다. 자금지원 업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업료 등 면제)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3.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자녀(신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지원받거나 면제 받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②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북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1조의2제1항을 안 제11조의2로 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의”를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로 한다.
- 안 제11조의2의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 안 제11조의2제2항은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11조의2(수업료 등 면제)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u> 1.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u> 2. <u>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수업료 등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u> 3. <u>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신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을 기준,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u>	제11조의2(수업료 등 면제)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u> 1.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2.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3. (개정안과 같음)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단체,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명목 으로 지원받거나 면제 받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u>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한다.</u>	<u>② <삭제></u>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원방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8 조(참전명예수당) ①도지사는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u>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 급여금을 받는 사람 또는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u> 〈신 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조(참전명예수당) ①..... <u>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제11조(지원방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하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출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법 제6조에 따른 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융회사 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학자금 이자 지원

제 3 조(학자금 이자 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조(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 제2호와 제4호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제 5 조(우선순위) 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
2.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른 시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

제 6 조(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위탁 등) ①도지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나 법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3 장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 중지

제 8 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및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9 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다른 시도로 진출하여 제2조제2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4 장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조건·규모·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의(開議)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의(開議)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3(특별휴가) ①~⑩(생략)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①~⑩(현행과 같음) <u>⑪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u>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 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5 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8. (생략)	제 5 조(현행과 같음)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8.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및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법인의 설립·운영) ①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3.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4. 문화콘텐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5.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6. 영화·드라마 등 영상산업 지원사업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탁 및 용역사업

8.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지원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4 조(정관)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5 조(임원 등) ①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진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재원 조성)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경상북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 7 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③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보고, 검사 등) ①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4조제2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로 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u>제 4 조(정관) ① (생략)</u> ②「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u>사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u>	<u>제 4 조(정관) ① (생략)</u> ②「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u>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u>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 및
전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 및 전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경상북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 및 전문위원회운영
조례”를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이, 부위원장은 국·
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
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최연장 위원”을 “위촉시기가 가장 빠른 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전문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회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의”의 “간사는 전문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위원
회의 회무를 처리한다”를 “간사는 전문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
위원회의 회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로 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경상북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u> 제 2 조(심의회의 구성) ①(생략) ②<u>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내에 있는 국·공립 농과계대학의 학장이, 부위원장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u> <u>다만 도내에 국·공립농과계대학이 2 이상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대학의 학장이 된다.</u> 1. (생략) 2.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수 1인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u>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u>의 경상북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인 4. (생략)	<u>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u> 제 2 조(심의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u>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이, 부위원장은 국·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u>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u>산림조합중앙회</u> 4.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 2 조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 7 조(전문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 ②전문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u>최연장 위원</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간사) ① (생략) ②간사는 전문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u>회무를 처리한다.</u>	제 7 조(전문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촉 시기가 가장 빠른 위원</u>	제 7 조 (개정안과 같음) 제 9 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회무처리 및 회의</u> <u>록을 작성 비치한다.</u>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경상북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 3 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 4 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6 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①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등) ①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매학년도”를 “매 학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본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병설학교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
개시일”을 “임기만료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기
중 위원이 궐원”을 “임기 중 위원이 결원”으로,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결원되지”를 “결원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를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때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위사실”을 “거짓 사실”로, “때에는”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2차투표”를 “2차 투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인인”을 “2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 유고시에”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임기중”을 “임기 중”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인 이상”을 “1명 이상”으로, “등에 대하여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표회의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0조제1항 중 “임기 및 학기 개시후 15일 이내에 각각 소집한다”를 “규정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학교장이 이를”을 “학교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림으로써”를 “알려”로,
“교사”를 “교직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학부모·교원”을 “학부모·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의록에 이를”을 “회의록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부모·교원”을 “학부모·교직원”으로,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을 “다음 정기회의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이의 운영을”을 “운영을”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교직원중”을 “교직원 중”으로 한다.

제17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u>초·중등교육법</u> 제34조 및 <u>동법시행령</u>(이하 “<u>령</u>”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u>의하여</u> 경상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u>초·중등교육법</u>』 …… <u>같은 법 시행령</u> …… …… <u>따라</u> …… …… …….
제 2 조(위원회의 설치 범위) ①공립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u>매학년도</u> 신입생 입학일의 학생수로 정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는 <u>당해</u>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분교장은 <u>당해</u>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생략) <u><신 설></u>	제 2 조(위원회의 설치 범위) ①…… …… …… <u>매 학년도</u> …… ……. ②…… <u>해당</u> …… ……. ③…… <u>본교</u> …… …… …… ……. ④ (현행과 같음) <u>⑤병설학교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u>
제 3 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	제 3 조(위원의 선출 등) ①…… …… …… <u>임기만료일</u> ……

현행	개정안
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신설〉	 ②임기 중 위원이 결원..... 남은 임기로..... 결원되지 ③..... 그 밖의 해당 ④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제 4 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 4 조(위원의 임기) ①..... 한 차례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 5 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u>국가공무원법</u>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 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히으로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한다</u>.	제 5 조(위원의 자격) ①.....「<u>국가공무원법</u>」..... ② (현행과 같음) ③..... <u>아니한다</u>.
제 6 조(위원의 의무 등) ①·② (생략) ③위원은 <u>당해</u>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 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 하는 <u>학교운영지원비</u>외에는 일체의 비 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 6 조(위원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해당</u> <u>해서는</u> ④..... <u>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u> <u>해서는 안된다</u>.
제 7 조(위원의 퇴직) ①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u>사유없이</u>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u>때에는</u>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 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 용에 <u>허위사실</u>이 있는 것이 발견된 <u>때</u> <u>에는</u>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7 조(위원의 퇴직) ①..... <u>사유 없이</u> <u>경우</u> ②..... <u>거짓 사실</u> <u>때</u> <u>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u>

현 행	개 정 안
제 8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② (생략)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 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 8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2차 투표..... 2명인 ④..... 운영위원회의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⑥..... 임기 중 남은 기간..... 제 9 조(심의사항) ①.....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②..... 1명 이상..... 등은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

현행	개정안
〈신설〉	<u>비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표회의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0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입학 및 학기 개시후 15일 이내에 각각 소집한다.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규정으로 정한다. ②.....

현행	개정안
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u>긴급을 요하는</u> 안전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u>긴급한</u>, ③<u>운영위원회의</u>,
제11조(안전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은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u>학교장이</u> 이를 제출한다.	제11조(안전의 제출·발의) <u>학교장이</u>,
제13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위원회의 결정으로</u>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전 등을 <u>알림으로써</u> 일반 학부모, <u>교사</u>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공개원칙) ①..... <u>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u>, ②..... <u>알려</u> <u>교직원</u>,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생략)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	개정안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u>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u>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u>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조직하며, 이 경우 비조리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u>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u>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u>교직원중에서</u> 위원장이 임명한다.	<u>학부모·교직원</u> <u>회의록에</u>, ③..... <u>학부모·교직원</u> <u>다음 정기회의시</u>,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u>안전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u> ②..... <u>운영을</u> 제16조(간사) <u>교직원 중</u>,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지급 및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 침이 정하는 바에 <u>의한다</u> .	제17조(운영경비 등) <u>따른다</u>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10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의료원(포항·김천·안동)

제9조제4항 중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출석하지 아니하
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감사) ① (생략)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u>10일 이내</u>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 ⑤ (생략)	제 2 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14일 이내</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 5 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신 설〉	제 5 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의료원(포항·김천·안동)
제 9 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생략)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u>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도지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제 9 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u>,.

■ 결 의 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1. 9. 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활동기간 내 제출되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함.

3. 내 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5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추천으로 한다.
- 위원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48회 정례회·제249회 임시회)



2011. 10 인쇄 / 2011. 10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602-5284

FAX : 602-5140



<비매품>

